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8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임호선·정준호·이상식

전진숙 • 이정문 • 김동아

문대림 · 강경숙 · 위성락

이연희 · 임미애 · 김승원

오세희 • 유호중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,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, 피해자 등이 특별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원스톱으 로 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

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,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중 양대책본부장은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·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1조).

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"를 "선포된 특별 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특별재난 선포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.

#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61조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 제61조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 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 원) ① -----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----선포된 특별재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 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 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-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·재 정상 · 금융상 ·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 설>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 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 근에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